

『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』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6년 3월 23일

나. 발 의 자 : 이정석 의원 외 5인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4월 20일

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이정석 의원

### 나. 제안이유

- 저소득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사회적 교육 기회 균등 제공
- 근로자 복지 향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

### 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 관내 근로자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(안 제1조)

- 장학금을 지급할 장학생 수와 학생 1인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(안 제3조)
-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운영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은 부시장과 한국노총구미지부장이 공동으로 한다(안 제4조)

## 라. 참고사항

### ○ 조항별 분석

| 조                       |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문제점 및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                | 이 조례는 구미시 <u>관내 근로자 자녀</u> 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<u>관내 근로자 자녀</u> 를 <u>관내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</u> 로 수정 적용함이 개념상 명확할 것으로 사료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         | ①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구미시에 소재하는 기업체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<u>고등대학생</u><br>②기업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이바지한 근로자의 자녀인 <u>고등대학생</u><br>③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제1조(목적)를 수정할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<br>○ 지급 대상의 <u>고등·대학생</u> 을 <u>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</u> 으로 수정함이 어법상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3조(장학생 수와 지급액)         | ①장학금을 지급할 장학생수와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위원회는 심의 기관이므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<u>시장</u> 이 정한다고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4조(장학생선발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) | ①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<br>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br>③위원장은 부시장과 한국노총구미지부장이 공동으로 한다.<br>④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종사 하는 자 중에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 한다 | ○ ③항의 부시장과 한국노총 구미지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할 경우 회의 주재 및 업무 처리 등에서 혼선이 초래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사회 통념상 위원장을 1인으로 함이 원만한 의사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<br>○ 또한 한국노총구미지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명시할 경우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단체에서의 반발이 예상됨.<br>○ 따라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, 부위원장은 노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대표 1인으로 함이 운영면에서 상호 조화를 이룰 것으로 판단됨<br>○ 위원회 업무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간사를 지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<br>⑤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동복지과 노사협력담당으로 한다 |

| 조            |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문제점 및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9조(장학생의 관리) |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한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학생의 관리는 교육청과의 협력이 있을 경우 원만한 지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<br/>따라서 「시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장학생이」라는 자구를 삽입하여야 할 것임</li> </ul> |

○ 근로자 자녀 장학금 운용 실태 : 전국 4곳( 장학금1, 기금3 )

| 시 도 명 | 시 군 명 | 조        | 레   | 명   | 재    | 원  | 비  | 고 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|----|----|
| 경상북도  |       | 경상북도중소기업 | 근로자 | 자녀  | 장학기금 | 설치 | 및  | 운용 |
| 경상남도  |       | 경상남도     | 근로자 | 자녀  | 장학기금 | 설치 | 및  | 운용 |
|       | 창 원 시 | 창원시      | 근로자 | 자녀  | 장학금  | 지급 | 조례 |    |
|       | 군 포 시 | 군포시      | 근로자 | 장학금 | 설치   | 및  | 운용 | 에  |

○ 장학금 지원 현황

( 단위 : 인원, 천원 )

| 시 군 명 | 구 | 분 | 2004년도 |        | 2005년도 |        | 비 | 고   |
|-------|---|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|-----|
|       |   |   | 인      | 원      | 금      | 액      | 인 | 원   |
| 창 원 시 | 소 | 계 | 50     | 30,000 | 50     | 30,000 |   | 장학금 |
|       | 중 | 학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고 | 등 | 50     | 30,000 | 50     | 30,000 |   |     |
|       | 대 | 학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|     |
| 군 포 시 | 소 | 계 | 5      | 10,000 | 10     | 17,750 |   | 기   |
|       | 중 | 학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고 | 등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대 | 학 | 5      | 10,000 | 10     | 17,750 |   |     |

○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 시군별 집행 실적(2004년도)

( 단 위 : 인원, 천원 )

| 시 군 명 | 계  | 고 등 학 생 |        | 대 학 생 |        | 비 고 |
|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|
|       |    | 인 원     | 금 액    | 인 원   | 금 액    |     |
| 계     | 64 | 30      | 26,952 | 34    | 64,000 |     |
| 포 항 시 | 8  | 5       | 4,809  | 3     | 6,000  |     |
| 경 주 시 | 7  | 4       | 4,054  | 3     | 6,000  |     |
| 김 천 시 | 1  |         |        | 1     | 2,000  |     |
| 안 동 시 | 6  | 5       | 4,386  | 1     | 2,000  |     |
| 구 미 시 | 6  | 2       | 1,489  | 4     | 8,000  |     |
| 상 주 시 | 3  | 2       | 2,023  | 1     | 2,000  |     |
| 문 경 시 | 3  | 3       | 1,106  |       |        |     |
| 경 산 시 | 3  | 1       | 1,094  | 2     | 3,000  |     |
| 군 위 군 | 2  | 1       | 953    | 1     | 2,000  |     |
| 영 덕 군 | 1  |         |        | 1     | 2,000  |     |
| 고 령 군 | 3  | 2       | 2,136  | 1     | 2,000  |     |
| 성 주 군 | 1  |         |        | 1     | 2,000  |     |
| 칠 곡 군 | 7  | 2       | 2,129  | 5     | 9,000  |     |
| 봉 화 군 | 1  |         |        | 1     | 2,000  |     |
| 울 진 군 | 2  |         |        | 2     | 3,000  |     |
| 한국노총  | 10 | 3       | 2,773  | 7     | 13,000 |     |

○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 시군별 집행 실적(2005년도)

( 단위 : 인원, 천원 )

| 시 군 명 | 계  | 고 등 학 생 |        | 대 학 생 |         | 비 고 |
|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|
|       |    | 인 원     | 금 액    | 인 원   | 금 액     |     |
| 계     | 89 | 31      | 31,735 | 58    | 110,000 |     |
| 포 항 시 | 6  | 4       | 4,506  | 2     | 3,000   |     |
| 경 주 시 |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
| 김 천 시 | 1  |         |        | 1     | 2,000   |     |
| 안 동 시 | 6  | 4       | 4,510  | 2     | 4,000   |     |
| 구 미 시 | 15 | 4       | 3,589  | 11    | 20,000  |     |
| 영 주 시 | 2  | 1       | 1,134  | 1     | 2,000   |     |
| 문 경 시 | 2  | 1       | 1,145  | 1     | 2,000   |     |
| 경 산 시 | 10 | 3       | 3,260  | 7     | 13,000  |     |
| 군 위 군 | 1  | 1       | 1,057  |       |         |     |
| 영 덕 군 | 3  | 1       | 1,065  | 2     | 4,000   |     |
| 성 주 군 | 1  |         |        | 1     | 2,000   |     |
| 칠 곡 군 | 3  | 1       | 1,073  | 2     | 3,000   |     |
| 봉 화 군 | 1  |         |        | 1     | 2,000   |     |
| 울 진 군 | 1  |         |        | 1     | 2,000   |     |
| 한국노총  | 37 | 11      | 10,396 | 26    | 51,000  |     |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- 본 조례안은 근로자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제정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서
- 안제1조(목적), 안제2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, 안제3조(장학생 수와 지급액), 안제4조(장학생선발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), 안제9조(장학생의 관리)에서의 문제점 및 대처 방안을 「조항별 분석서」에서 검토 하였으므로 의정 활동에 참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전국 검색 결과 4개 자치단체에서 상기 「참고사항」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금 및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학금 지급 조례(통리장, 새마을지도자, 저소득 자녀)등은 일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또는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,
- 이번 의원 발의 조례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제정함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 장학금 지급 조례가 사장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의 조성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

- 안제4조③항의 한국노총구미지부장이라 명시한 것은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단체에서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조례안 검토 의견에서도 “장학금 지급에 관해 심의하는 보조기관인 장학생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·실질적으로 사전에 개입하여 관여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초 조례 제정 목적에 위배된다”라는 회시도 있으므로 현실에서 규범력을 발휘하고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어느 특정의 개인이나 단체에 재화를 투입함으로 인하여 시민 모두에게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바,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근로자의 고등·대학생 자녀를 한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은,
- 일반 주민은 물론 다른 농민단체 등 근로자가 아닌 단체의 자녀 및 고등대학생을 두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이 결여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공익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도 신중히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며, 향후 각 단체의 요구에 대한 장학금 조례가 남발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미시 장학금 지급 관련 조례와 통합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.
- 따라서 입법은 진실과 현실적인 것에 바탕을 두어야하며 실제적인 효용성이 있어야 함을 고려하여 더욱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